



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7. 15. / (총 1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김 우 람		044-202-1713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 장	김 성 훈	전 화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배 경 택		044-202-1810
해외입국관리팀	담 당 자	하 미 희		044-202-180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선원 관리 강화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방역강화 대상 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선원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면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유입 사례와 관련하여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최근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입국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발견된 것과 관련, 해외입국자 검역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유행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등을 파악하여 생산될 경우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방역 당국에 지시하였다.

## 1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선원 관리 강화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선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하여 7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기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한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하여야 하며,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는 한편,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 한편 7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 역시 강화한다.
    - \* 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하여 항공편으로 입국 하는 선원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











-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은 잠정 중지되어,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제시·제출 역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 \*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
- □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개방성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적시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2 광주·전남 지역 이동량 분석 결과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이후 지역 주민 이동량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하였다.
  - \* S 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 이동건수로 집계하여 전체 이동 추정
- □ 분석 결과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7.2.) 후 1주간 (7.2.~7.8.) 이동량은 직전 주(6.25.~7.1.) 대비 약 24.1%가 감소하였으며,
  - 11일간 총 42.0%가 감소하여,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직전일(7.1.) 대비 지난 일요일(7.12.) 기준 약 58%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 (7.1.(수)) 94.8만 건 → (7.12.(일)) 55만 건 (△39.8만 건 /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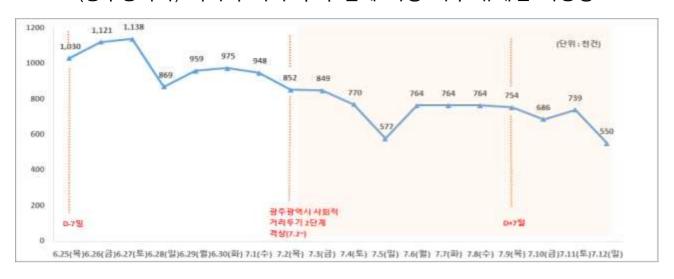








### <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이후 휴대폰 이동량 >



- □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7.6.) 후 1주간 이동량 (7.6.~7.12.)은 직전 주(6.29.~7.5.) 대비 약 5.5%가 감소하였으며,
  - 7일간 총 15.3%가 감소하여,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직전일(7.5.) 대비 지난 일요일(7.12.) 기준 약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 (7.5.(일)) 111.4만건 → (7.12.(일)) 94.4만건 (△17.0만건 / △15.3%)
      - <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이후 휴대폰 이동량 >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주·전남 지역의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한 후 모임·외출을 자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효과를 나타내며 광주·전남 지역의 환자 추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다만 아직 다수의 접촉자가 있어 엄중한 상황으로 **광주광역시**는 당초 7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7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와 다중이용시설 운영 금지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있음을 이해하나, 확산 초기의 억제가 중요한 만큼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였다.

## 3 방역 사각지대 기획점검 후속 조치

- □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취약한 사각지대를 사전발굴하고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간 고위험시설,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
  - 거주자 대부분이 노약자 및 기저질환자인 쪽방촌·고시원 등에 대해서 방역지침을 마련(6.19.)하는 한편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다.
    - 외국인 밀집지역('벌집촌'등)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방역물품 지원을 실시(7.1.~7.3.)하였고, 무자격 체류자에 대해 방역지침을 안내(6.23.~24.)하였다.
    - 인력사무소, 현장식당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실시(6.25.~)하는 한편, 인력사무소 방역지침을 마련(7.8)하고 전국 인력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 방역물품 지급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불특정 다수가 화장실,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하여 확산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도 식당 테이블 일렬 배치, 투명 가림막설치 등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방역 강화지침을 전달(6.15.)하였다.
- 이외에도 소공연장, 볼링장·당구장, 육가공업체 등 밀접·밀집· 밀폐되기 쉽고 방역 관리가 필요한 시설·장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다.
- 한편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 위반 신고, 방역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해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842건의 신고 및 제안을 접수하여 그 중 421건(50%)을 처리하였다.
  -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 위반 등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하고,
  - 집단감염 우려가 있다고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평가한 후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 \* 카지노바(포커바), 실내체육관(주짓수, 유도장, 합기도장 등), 성인 학원(고시· 댄스·편입·연기·음악), 관광버스, 호텔 풀파티 등
  - 그 중 하나로 실내 운동시설에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7.10.)하여, 태권도·합기도나 줌바·스피닝 등 운동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으나, 헬스·PT장에서 저녁 시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미흡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이용 시간대(19시~22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14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C방 706개소, ▲학원
    388개소 등 40개 분야 총 14,502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발열 확인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218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경기에서는 PC방 585개소 등 2,378개소를 점검하여, 발열 확인 미흡 등 33건을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학원 109개소 등 406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9건을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0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 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73개반, 585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49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1,66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14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005명이고,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990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2,01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41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14.)는 재난지원금 신청, 식당 방문 등을 위해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여 각각 **고발**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 한편, 현재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4개 시·도\*에서 AI 콜센터를 운영 중으로, 일 1~2회의 유선 모니터링을 AI 콜 전화로 대체하여 확인하고 있다.
    - \* 서울(동작), 경기, 경남, 경북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6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5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7.14.) 입소 139명, 퇴소 174명 /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5명











###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8. 마스크 착용법
  - 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